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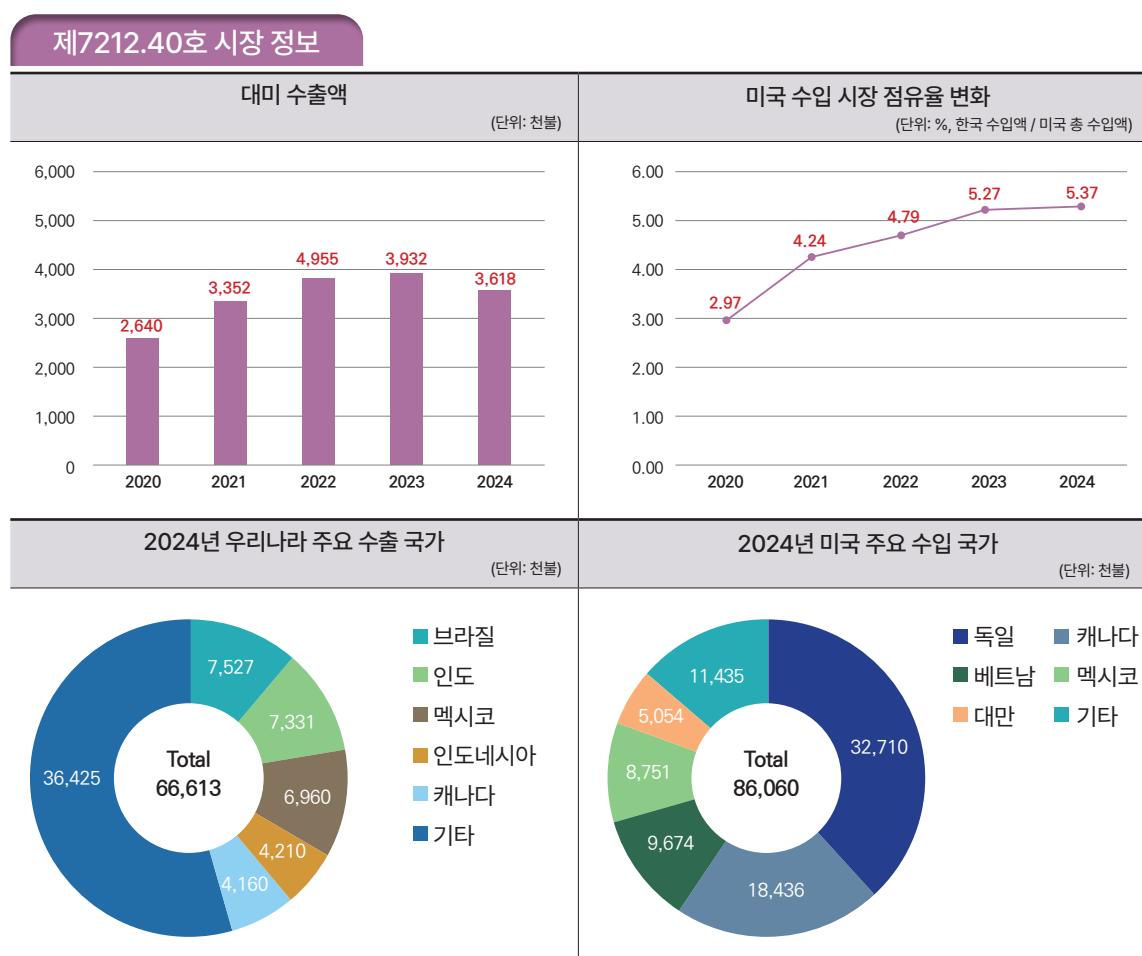
철강 코일

요약

사례명	철강 코일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NY N324853 (2022.04.07.)
사실관계	프랑스에서 용융 아연도금, 프라이머 도포 및 폴리에스터 코팅 처리된 냉간압연 비합금강 코일을 네덜란드로 보내 절단, 천공, 재권취 후 캐나다로 수출하고 캐나다에서는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
쟁점 및 판정	<p>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p>해당 물품은 프랑스에서 평판압연 제품(flat-rolled product)에서 출발하였고, 네덜란드에서의 추가 가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판압연 제품으로 남아있으므로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절단 및 천공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야기하지 않아 철강 코일의 원산지는 프랑스임</p>
근거법령	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

I 품목개요

품목정보		
HS Code	제7212.40호	
세율	한국 기본세율	8%
	미국 기본세율	0%
	한-미 FTA 협정세율	0%
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	



❖ 자료: K-stat

II 판정사례

사례명 [철강 코일]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NY N324853 (2022.04.07.)

사실관계

요청자 Meteor Horticulture Systems Inc. (대리인: Pacific Customs Brokers Inc.)

제품	제품명	• 철강 코일
	구성	• 용융 아연도금, 프라이머 도포 및 폴리에스터 코팅 처리한 냉간압연 비합금강 코일 (프랑스산, 폭 1,120mm~2,000m, 두께 0.6mm)
	용도	• 온실 배수 시스템(gutter systems) 제조용
	완제품 HTSUS	• 7212.40.5000

제조공정



상세공정

네덜란드

1. 프랑스산 냉간압연 비합금강 코일 수입
2. 언코일(uncoiling)
3. 폭 312mm 또는 375mm 슬레이트 형태 절단
4. 일정 간격으로 두 개의 구멍을 타공 또는 천공
5. 다시 코일 형태로 감기(recoiling)
6. 캐나다로 수출

캐나다

1. 네덜란드에서 가공된 코일을 수입하여 가공 없이 미국으로 수출

쟁점사항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

관련 법령 및 분석



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

관련 법령 검토

☞ 『19 C.F.R. § 134.1(b)』에 따르면,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,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,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이 발생해야 함

- 실질적 변형의 요건: 물품의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

❖ 참고 판례: *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, Inc.*, 27 CCPA 267, C.A.D. 98 (1940)

❖ 참고 판례: *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*, 16 CIT 308 (1992), aff'd, 989 F.2d 1201 (Fed. Cir. 1993)

- 가공 또는 결합 공정이 단순하여 물품의 본질적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❖ 참고 판례: *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*, 3 CIT 220, 542 F. Supp. 1026, 1029 (1982), aff'd, 702 F.2d 1022 (Fed. Cir. 1983)

판정 결과

☞ 해당 물품은 프랑스에서 평판압연 제품(flat-rolled product)에서 출발하였고, 네덜란드에서의 추가 가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판압연 제품으로 남아있으므로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절단 및 천공 작업은 실질적 변형을 야기하지 않아 철강 코일의 원산지는 프랑스임

기타 의견

☞ 요청자가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을 근거로 『19 C.F.R. § 102』에 따른 원산지판정을 제시하였으나, 해당 코일은 캐나다에서 단순히 반입 및 반출만 이루어졌고, 실질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USMCA 국가의 제품으로 간주될 수 없어 해당 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음

☞ 『대통령 포고령(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)』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되며, 해당 제품(HTSUS 7212.40.5000)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므로, 수입 시 Chapter 72,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와 함께 Chapter 99(추가 관세 분류)도 함께 신고해야 함

결론

- ✓ 네덜란드에서의 공정(절단, 편침)은 단순 가공으로, 원재료의 정체성 및 사용 목적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프랑스로 간주

(III) 시사점

- 철강 제품의 경우, 단순 절단, 편침과 같은 가공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

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24853 (2022.04.07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24853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 (1940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1707/united-states-v-gibson-thomsen-co/?q=United+States+v.+Gibson-Thomsen+Co>
- 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 (1993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737087/national-hand-tool-corp-v-united-states/?q=National+Hand+Tool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
- 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 (1983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2283980/uniroyal-inc-v-united-states/>